

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

의결권은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. 당사 제 56 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와 주주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아 래 -

1.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

-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시: 신분증 지참
-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
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, 기명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
2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의한 행사

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

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.

- ① 전자투표,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: 「<http://evote.ksd.or.kr>」
- ② 전자투표 행사, 전자위임장 수여기간
: 2017 년 3 월 14 일(화) ~ 2017 년 3 월 23 일(목)
- 기간 중 오전 9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
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 시까지만 가능)
- ③ 행사방법: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 종류: 증권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
※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의 철회 또는 변경 불가(상법 시행령 제 13 조 제 3 항)

3. 예탁결제원에 의한 의결권 행사

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(법률 제 11845 호, 2013.5.28) 제 18 조에 의거 동법 종전 규정 제 314 조 제 5 항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.

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‘의사표시
통지서’를 우편 또는 팩스로 주주총회일 5 영업일전까지 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
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의 참석주식수를
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성과 반대 비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
행사(Shadow Voting)하게 됩니다.

※ 의사표시 통지서 제출처

: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 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
FAX (02-3774-3244~5)

의사표시 통지서

한국예탁결제원 귀중

본인은 2017 년 3 월 24 일 개최하는 한화투자증권(주)의 제 56 기 정기주주총회 및
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(법률 제 11845 호,
2013.5.28) 제 18 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 314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
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.

실질주주번호		의 사 표 시		
주민등록번호		직접행사	대리행사	불행사
의결권주식수				

2017 년 월 일

실질주주 성 명: (인 또는 서명)

주 소:

2017 년 3 월 6 일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

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여 승 주 (직인생략)